

해 양 수 산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삼척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내 용

강원도¹⁹⁶⁾는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동산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동산인 어장관리선 등의 중요재산을 [표 1]과 같이 취득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시군	중요 재 산명	사업비 내역(천 원)			규모	준공일
		계	국비	지 방비		
합 계		4,466,981	2,174,144	2,292,837		
삼척시	2012 어선인양기	150,000	75,000	75,000	3대 (15톤)	13.02.08
	2013 ○○어촌계자율관리공동체(자원관리선)	57,600	32,000	25,600	1대 (4.91톤)	13.12.17
	2013 어선인양기	50,000	25,000	25,000	1대 (5톤)	13.11.13
	2014 수산물위판장시설개선(위판장)	390,000	120,000	270,000	410.71㎡	15.08.26
	2014 어선인양기	50,000	40,000	10,000	1대 (5톤)	14.06.16
	2015 어선인양기	46,500	37,200	9,300	1대 (5톤)	15.09.10
인 제 군	2014 수산물산지가공시설	360,000	180,000	180,000	219.02㎡	14.11.28
고 성 군	2012 ○○ 자율관리공동체(어장관리선)	90,614	50,341	40,273	1척/4.46톤	14.01.07
	2012 ○○○ 자율관리공동체(어장관리선)	14,029	7,794	6,235	1척/2톤	12.12.27
	2012 어선인양기	49,660	39,728	9,932	인양기 2대	13.02.03
	2013 수산물산지가공시설	400,000	250,000	150,000	2동(1,040.09㎡)	13.10.25

196) 중북감사 방지 차원에서 감사원 수감 지자체인 통시, 동해시, 춘천시, 속초시, 태백시, 홍천군은 제외

	2014 수산물산지가공시설	521,000	261,000	260,000	1동(454.65㎡)	15.01.28
	2015 ○○수협 수산물직매장	800,000	300,000	500,000	679.86㎡	15.11.27
	2016 수산물산지가공시설	300,000	150,000	150,000	1동(492㎡)	16.02.04
양양군	2012 수산물위판장(○○항)	400,000	160,000	240,000	지상층 4152㎡	12.11.08
	2012 수산물위판장(○○항)	350,000	140,000	210,000	지상층 360㎡	12.11.30
	2012 어선인양기	83,000	66,400	16,600	10톤급	12.08.20
	2013 ○○어촌계자율관리공동체(공동체회관)	108,000	60,000	48,000	101.43㎡	14.03.13
	2013 ○○어촌계자율관리공동체(공동체회관)	71,926	39,959	31,967	70.2㎡	13.08.02
	2013 어선인양기	84,652	67,722	16,930	10톤급	14.02.27
	2016 ○○항 어선인양기	90,000	72,000	18,000	10톤급	추진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¹⁹⁷⁾에 대한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한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 12.-(9)에 따르면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http://www.bojogeumjaesan.go.kr>)에 상시 공시하고, 중요재산은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며 6개월 마다 변동 현황을 수정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89호)」 제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취득

197) 중요재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중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한 중요재산에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7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취합하여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한 현황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공시하고,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 및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주기적(반기별)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삼척시 등 4개 시·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및 어장관리선 등의 중요재산을 [표 2]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중요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현황

시·군	해당기관 인터넷홈페이지 공시	중요재산공개 시스템공시	관리대장 작성·비치	변동사항 보고여부
삼척시	×	×	○	×
인제군	×	×	○	×
고성군	×	×	△(일부 미작성)	×
양양군	×	×	○	×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금번 감사에서 제외된 관할 시·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장,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및 어장관리선 등 중요재산에 대해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요재산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